

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-5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1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읍면동 기능전환의 실시와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운영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한시기구인 「주민자치지원단」의 존속시한을 1년 6월 연장함
 - 존속기한 : 당초 2002. 12. 31 ⇒ 변경 2004. 6. 30까지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00.11.21 조례 제1059호 부칙 제2조중 “주민자치과”를 “주민자치지원단”으로 하고, “2002년 12월 31일”을 “2004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개정되는 부칙(2000.11.21 조례 제1059호)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부 칙 <2000. 11. 21 조례 제1059호> 제1조 <생 략> 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되는 <u>주민자치과</u>의 존속기한은 <u>2002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 제3조 <생 략>	부 칙 <2000. 11. 21 조례 제1059호> 제1조 <현행과 같음> 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-----<u>주민자치지원단</u>-----<u>2004년6월30일</u>-----. 제3조 <현행과 같음>